

수도권 급속 유행, 역시나 ‘델타 변이’ 탓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78명 감염

3주 새 방역망 관리 비율 47.1%→36.9%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형(영국형)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표적인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 20여명 증가해 78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40%대가 무너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해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 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검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높고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형 변이 대비해서도 1.6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이 검출률이 39.3%였는데 알파형이 26.6%, 델타형이 12.7%였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작은 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더 빨리 더 쉽게 확산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주간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를 보면 7월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992.4명으로 직전 주 655.0명보다 337.4명 증가했다.

이중 60세 이상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78.1명으로, 직전 주 58.6명보다 19.5명 증가했다.

권역별 60세 이상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 6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7.4명, 경남권 4.0명, 강원 1.9명, 호남권과 제주 각각 1.7명, 경북권 1.0명 순이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6.9%로 나타나 3주 전(6월13~19일) 47.1%보다 1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24.3%에서 31.9%로 증가했다. 해외 유입 평균 확진자 수도 같은

기간 26.6명에서 62.0명까지 치솟았다.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은 전국에 588개가 있다. 수도권에 311개가 비어있다.

준-중환자 병상은 211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3990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2327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와 간호사 등 1727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장흥경찰, 보이스트피싱 범죄예방 은행원 감사장 전달

장흥경찰서는 지난 1일 정남진장흥농협 서부지점에서 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트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점을 방문한 김00(83세, 여)이 불안해하며 통장에 있는 돈 전액(800만원)을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트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트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날 방문한 김00(83세,여)은 “모르는 사람한테 국제전화로 전화가 와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놔둬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면서 “은행직원이 아니었으면 전 재산을 잃어버릴 뻔 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장흥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은 이00(23, 여)을 구속하는 등 금년 들어 4명을 검거·구속하였다.

장흥=김도영 기자

담양경찰, 생명존중 문제해결형 지역경찰활동 전개

담양경찰서는 선제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해 주민 참여 방법활동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죽목원 및 담양읍 주변이 야간에 인적이 없고 한적하여 자살우려가 높다’는 지역사회 문제를 청취하여 다양한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장소에 진출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자살 우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시설물(야광투시 로고젝트)를 설치하여 바닥과 벽면에 투시된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고민 말고 전화(상담 1393)주세요.”라는 글귀와 이미지를 통해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해경, 군부대 협업 통해 항포구 화재 조기 진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4일 완도군 어룡도 항포구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섬마을 주민과 신속하게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경 어룡도 항포구에 검은연기가 보이는 것을 해남군부대 땅끝소초에서 발견하고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접수 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땅끝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화재 확산을 대비해 주변 계류선박들에 대해 신속하게 이동조치 하고 연안구조정 자체 보유 중인 소화용 배수펌프를 활용하여 섬마을 주민과 합동으로 진화하였다.

완도해경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에 취약한 도서지역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완도=이민혁 기자

광주 남부소방, 이장자 광주 남부소방서장 취임

광주 남부소방서는 ‘제12대 이장자 남부소방서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자로 취임하는 이장자 서장은 지난 1986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해 소방학교 교육기획팀장,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7월 1일 소방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이 서장은 평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창의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등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소방행정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장자 서장은 “『청렴, 소중, 안전』의 복무방향을 강조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품격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허가증 두고 담양군-민원인 대립

감사원에 탄원서 접수.의뢰

담양군이 10년 전 교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허가증’을 두고 군과 민원인이 대립하고 있다. 민원인은 억울함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담양군으로부터 1993년 담양 봉산 대추리 738-4번지 등 총 12필지 6387.83㎡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AI와 구역역 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총 13회(준공처리 6회·변경신고처리 7회) 축종 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최종 축종변경(오리→돼지)후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를 접수했던 지난 2013년 1월 16일, A씨가 준공검사에 대한 문의를 하자, 담당공무원은 “분뇨를 축협에 위탁처리하고 축종만 변경된 경우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배출시설허가증 ‘담양군’

확인란에 도장을 날인했다.

하지만 4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5월에 담양군은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군의 처분으로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고, 2017년 5월 28일 행정상 ‘경고’ 처분이 됐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변경신고 등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고수리 공문서 등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게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완료 승인을 한다.

하지만, 2013년 1월 당시 담양군 담당주무관은 A씨에게 별도의 공문서로 준공검사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을 인지(2017년5월10일)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구두 상 통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실관계도 공문상으로도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 “하지만, 보통 변경신고 수리를 할 때 준공검사를 하라고 안내하며, 신고수리 공문에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해야 함’을 기재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군은 지난 2013년 1월 16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할 당시 A씨에게 전달한 ‘군 시행령’ 2항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이하·관련법률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문에 따라 변경신고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주장은 A씨가 신고한 변경내용과 ‘관련 법률 제15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법률 제15조 1항에는,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을 완료했을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신청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대로라면, A씨는 담양축협축산자원화센터에 분뇨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변경신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면적이 늘거나 줄지 않아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담양군이 관련법률 제15조를 정확히 적용했다면 A씨를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검찰에 송치해 범법자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환경관련 업체 대리인을 통해 군 담당자가 허가증을 교부했고, 대리인을 통해 허가증을 건네받았지만 시행문은 전달 받지 못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